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임도사업 설계심사 미실시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군

내 용

「임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¹⁾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신설·구조개량·보수)을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차상급 기관(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을 말한다)에 설계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차상급 기관은 대학교수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고,

시·도(산림환경연구소 등 시·도의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신설·구조개량·보수)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심사하되, 대학교수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심사는 설계도·서에 의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설계심사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아래 [표]와 같이 울산광역시 ○○군은 2013년~2017년 건당 공사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적합성 등의 검토를 위한 설계심사(발주청의 차상급 기관에서 실시) 제도가 2006. 8. 3.(산림청 훈령 제860호) 도입

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총 6건(신설 5, 구조개량 1)의 임대사업을 발주하면서 실시설계 검사 전에 차상급 기관인 울산광역시에 설계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울산광역시의 실시설계에 대한 타당성·적합성 등의 심사없이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검사하고 임대사업을 실행하였다.

[표] 임대사업 설계심사 미실시 내역

기 관	구 분	년도	시 설 현 황		계 약 자 (업체명)	계 약 금 액(원)		계약기간	준공일자
			개 소	거리 (km)		당 초	변 경		
	계			21.33		2,212,250,000	2,409,097,000		
○○○	신 설	2013	○○면 ○○리 산000-0외 22	4.13	○○○ ((유)○○종합건설)	525,740,000	554,807,000	2013. 1. 9. ~2013. 9.10.	2013. 9.11.
		2014	○○면 ○○리 산00외 6	2.96	○○○ (○○○○개발주)	334,669,000	348,728,000	2014. 5.15. ~2014.10.31.	2014.10.30.
			○○면 ○○리 산00 2	2.12	○○○ ((주)○○임업)	305,068,000	334,879,000	2014. 9.24. ~2015. 1.21.	2015. 1. 9.
			○○면 ○○리 산000외 22	2.74	○○○ (○○○○개발주)	465,595,000	563,081,000	2015. 3. 6. ~2015. 9. 6.	2015. 9. 4.
		2017	○○면 ○○리 산000외 20	2.78	○○○ (○○○○개발)	369,479,000	367,334,000	2017. 6. 1. ~2017.11.21.	2017.11.24.
	구조개량	2017	○○면 ○○리 산000외 25	6.6	○○○ (주○○)	211,699,000	240,268,000	2017. 9.25. ~2017.12. 8.	2017.12. 7.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군수는

[주의] 건당 2억원 이상인 임대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검사 전에 설계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